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3. . . (제 회)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종섭 (국방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세대주등이 예비군에게 소집통지서 전달시 전달방법을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전달해도 법적으로 유효하도록 하고, 세대주등의 소집통지서 전달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 제19082호, 2022. 12. 13. 공포, 2023. 6. 14. 시행)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의 전달방법과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 가. 법 제6조의2제4항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방법을 시행령에 반영(안 제16조제7항 신설)
- 나. 법 제15조의2제2항에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안 제28조제5항, 제39조, 별표1 신설)
- 다. 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정비(안 제16조제4항)
 - 1) 법 제6조의2에서 제4항이 제7항으로 조정됨에 따라, 제16조제4항의 규정 중 “제4항”을 “제7항”으로 정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예비군법(법률 제19082호, '22. 12. 13. 공포, '23. 6. 14.시행)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진행 중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2023. 2. 15. ~ 3. 27.

3) 행정규제 : 규제 대상 없음.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법 제6조의2제4항”을 “법 제6조의2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6조의2제4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호의 방법을 말한다.

1. 세대주등이 수령한 소집통지서 원본 또는 사본을 예비군대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
2. 세대주등이 수령한 소집통지서 원본 또는 사본을 등기우편으로 예비군대원에게 전송하는 방법
3. 세대주등이 수령한 소집통지서 원본을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예비군대원에게 전송하는 방법
4. 세대주등이 수령한 소집통지서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이를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입력한 전자문서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해 예비군대원 본인의 이동통신단말장치로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는 방법

5. 세대주등이 수령한 소집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소집일자 및 훈련일자, 훈련장소 등 구체적 내용을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해 예비군대원 본인의 이동통신단말장치로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는 방법

6. 세대주등이 수령한 소집통지서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이를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입력한 전자문서를 예비군대원 본인의 전자우편주소로 전송하는 방법

7. 기타 위 각호의 방법에 준하여 예비군대원에게 소집통지서의 소집일자 및 훈련일자, 훈련장소 등 구체적 내용을 알리는 방법

제2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15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제1항에 따른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2023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예비군법 시행령 [별표 1]

과태료 부과기준(제3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행위가 연속해서 발생한 경우
-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이상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지연 또는 파기한 경우	법 제15조의2제1항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소집통지서의 전달 등) ① ~ ③ (생략)	제16조(소집통지서의 전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수임군부대의 장은 <u>법 제6조의2제4항</u> 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로 전달하려면 미리 예비군대원에게 전자우편주소와 수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훈련소집일 30일 전에 인터넷을 이용하여 훈련 일정을 공시하여야 한다.	④ ----- <u>법 제6조의2제7항</u> ----- ----- ----- ----- ----- ----- ----- ----- ----- ----- -----.
⑤·⑥ (생략)	⑤·⑥ (현행과 같음)
<u><신설></u>	<u>⑦ 법 제6조의2제4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호의 방법을 말한다.</u>
	1. 세대주등이 수령한 소집통지서 원본 또는 사본을 예비군대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
	2. 세대주등이 수령한 소집통지서 원본 또는 사본을 등기우편으로 예비군대원에게 전송하는 방법

3. 세대주등이 수령한 소집통지서 원본을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예비군대원에게 전송하는 방법
4. 세대주등이 수령한 소집통지서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이를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입력한 전자문서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해 예비군대원 본인의 이동통신단말장치로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는 방법
5. 세대주등이 수령한 소집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소집일자 및 훈련일자, 훈련장소 등 구체적 내용을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해 예비군대원 본인의 이동통신단말장치로 전자적 방법으로

	<u>전송하는 방법</u> 6. 세대주등이 수령한 소집통지서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이를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입력한 전자문서를 예비군대원 본인의 전자우편주소로 전송하는 방법 7. 기타 위 각호의 방법에 준하여 예비군대원에게 소집통지서의 소집일자 및 훈련일자, 훈련장소 등 구체적 내용을 알리는 방법
제2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④ (생략) <u><신설></u> <u><신설></u>	제2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15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제1항에 따른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연 락 처	(02) 748 - 5245